

# 한국의 온라인 그루밍

탁틴내일(엑팟 코리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권현정

# Contents

- Part 1. 한국의 온라인 그루밍 현황
- Part 2. 국민NGO와 국민들의 대응
- Part 3.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 정책
- Part 4. 이후 과제

# ‘온라인 그루밍’ 정의, 범위

- 비접촉(온라인) 또는 접촉(오프라인) 성적 관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인터넷 또는 다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
- 최소한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아동에게 온·오프라인에서의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인의 의사소통, 유인, 유혹, 제안, 제의 또는 유사한 행위 포함.
- 독립적 범죄로 처벌해야 함

\* 출처: 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ICMEC)(2017), 성적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법 및 외국 법제 검토(번역: 엑팟 코리아 탁틴

- 범위: 온라인 그루밍 vs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vs 직접적인 성적 접근

# 낯선 사람에게 연락 받은 매체 및 내용(온라인 그루밍)

주로 연락 받은 매체는 '메신저(85.3%)'와 'SNS 게시글에 대한 댓글(69.6%)', '게임(61.1%)'  
(복수응답, Base=쪽지나 대화신청을 받은 학생, n=585, 단위 : %)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했다 22.6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자고 했다 18.6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9.6

얼굴, 손, 발, 몸, 특정신체부위 등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였다 5.6

친구가 되고 싶다/친해지고 싶다/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하였다 4.9

사진이나 영상을 팔라고 하였다 1.5

신체 접촉을 하자고 했다 1.1

특정 신체 부위,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 0.9

속옷 등을 팔라고 했다 0.8

재워주겠다고 했다 0.7

스폰서 제안을 했다 0.2

\* 출처: 서울시, 탁틴내일. 2020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관련 피해 현황

전체 43,544명 (단위: 명, %)

구 분	있다
1) 온라인에서 야한 농담, 섹드립이나 패드립과 같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 있다.	19,486(44.8)
2)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	4,857(11.2)
3)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불쾌한 말을 들은 적 있다.	5,129(11.8)
4)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적 있다(스팸 제외).	1,138(2.6)
5) 성행위나 신체노출을 촬영하자고 또는 촬영해 보내 달라고 요구 받은 적 있다.	757(1.7)

\*출처(표 재구성): 교육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2019

##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 후 감정 조사에서

- ‘불쾌하거나 화가 났다’에 44.2~48.5%로 가장 응답률 높음
- 피해 문항에 따라 ‘그 일을 떠올리면 괴롭다’,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불쑥 떠오르거나 머리 속에 그려진다’, ‘우울했다’ 등에도 5% 이상 응답
- ‘불쾌하거나 화가 났다’ 응답 성별 차이
  -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적 있다(스팸 제외)”  
여 58.3% / 남 23.4%
  - “성행위나 신체노출을 촬영하자고 또는 촬영해 보내 달라고 요구 받은 적 있다” 여 54.8% / 남 14.0%

# 한국 청소년 온라인상 성폭력 피해 현황

전체 43,544명 (단위: 명, %)

구 분	있다
1) 동의 없이 알몸이나 성기 사진, 음란물 등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	2,182(5.0)
2)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에 나의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 있다. <b>(2020.5.19부터 처벌)</b>	506(1.2)
3) 동의 없이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 있다.	565(1.3)
4) 불법촬영 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서 유포/재유포된 적 있다.	594(1.4)
5) 나의 신체 또는 성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 있다. <b>(2020.5.19부터 성폭력으로 처벌)</b>	243(0.6)

\*출처(표 재구성): 교육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2019

#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오프라인에서 피해를 경험한 경우

- 2188명이 오프라인에서 만났고 그 중 피해 경험 119건(중복 응답)
  - 강제추행, 강간, 신체 촬영 등
- 상대방의 성별 및 연령:
  - 여성과 남성 모두 이성에게 경험한 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동일한 성(여성-여성, 남성-남성)에 의한 피해도 나타났다.
  - 상대방의 연령은 또래인 10대가 64.7%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6.2%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 고등학생 여성의 경우 상대방이 2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출처: 교육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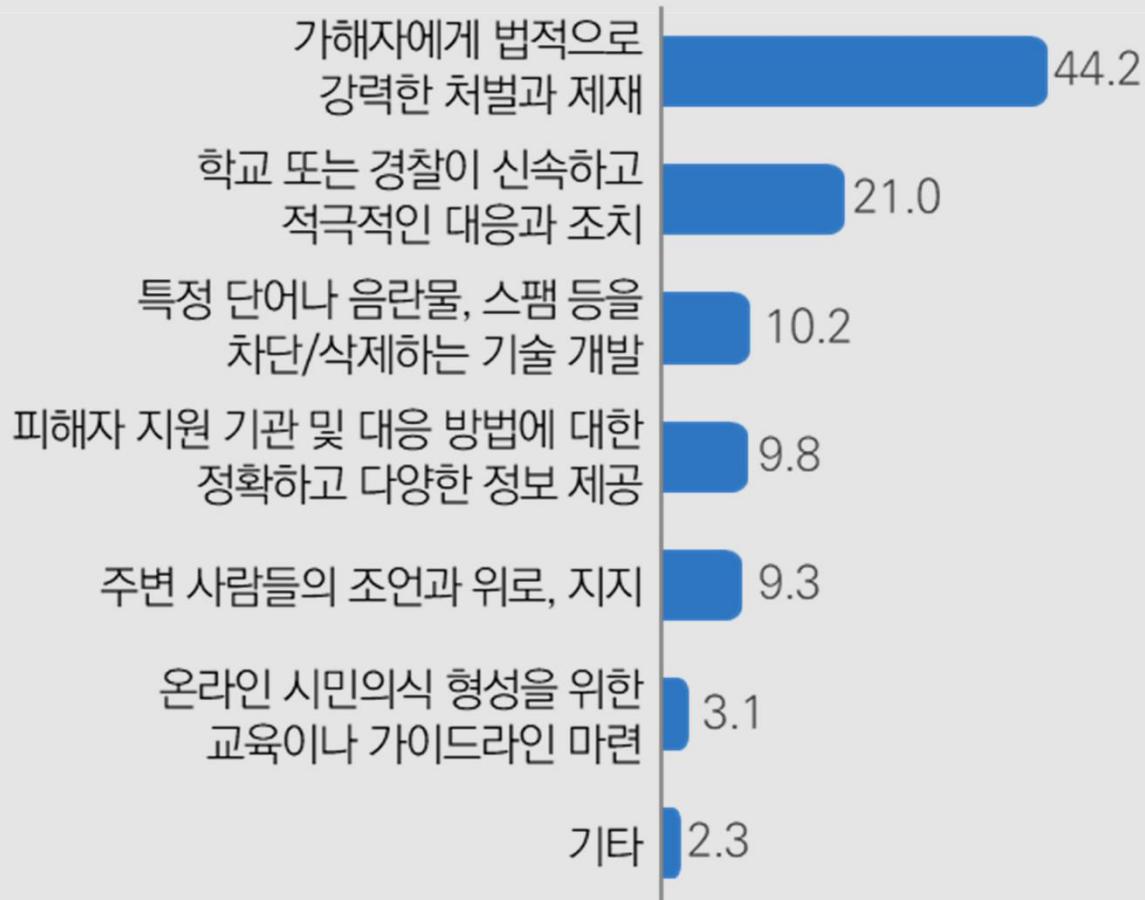
# 2019 성매매 실태조사

- **위기청소년 조건만남 경험**(166명)
  -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은 47.6%(79명)
  - 조건만남을 경험한 시기는 대부분 탈가정 이후(77.3%)
  -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는 채팅앱(46.2%), 랜덤채팅 앱(33.3%), 채팅사이트(7.7%) 등 **온라인이 87.2%**
- **위기청소년**: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소년원의 협조로 설문조사 실시
- **조건만남(청소년 성매매)**: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지인의 소개, 또는 우연한 기회에 돈, 식사, 선물, 술 등의 대가를 약속 받고 남성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2019).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성적인 피해(온라인 성희롱, 온라인 성폭력 등) 발생 시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안

(Base=전체, n=1,607, 단위 : %)



\*출처:서울시, 탁틴내일. 2020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온라인 그루밍 방식

- N번방의 '갓갓' 문형욱

2018년 하반기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경찰 사칭

-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

2019년 7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

# 한국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새로운 양상

- 그루밍, 성착취 공간, 대상의 확대
  -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공간으로, 익명성, 1:1 공간 활용
  - 온라인에서만으로도 온갖 성착취와 성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그루밍은 더 이상 오프라인 성범죄의 예비행위만이 아님
- 피해 촬영물 취득 방법 변화
  -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그루밍으로 유인, 설득 또는 그루밍 후 협박, 강요하여
  -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도록 유도하거나 가해자가 웹 캠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확대
- 협박,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그루밍 후 성착취가 빠르게 발생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민들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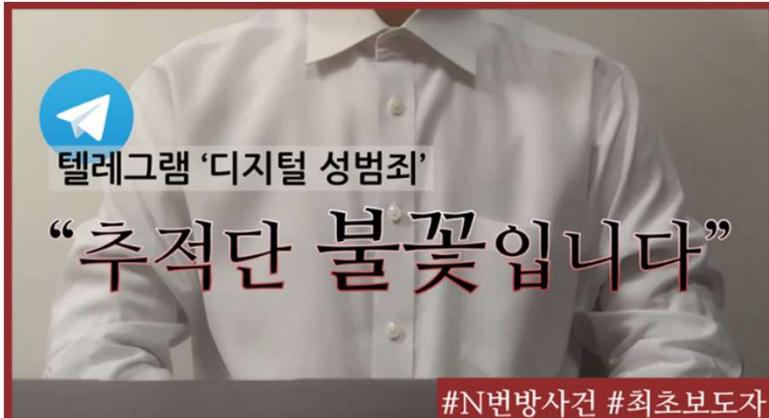
## - 국민청원

- 국제공조수사 청와대 국민청원(2020. 1. 2 / 22만여명)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수사기관의 2차 가해 방지 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요구(2020. 1.15 / 10만 여명) – **국민 청원 1호 법안 탄생**
- 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 (2020. 3. 18 / 257만)
-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2020. 3. 20 / 185만)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2020년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현재 60개 단체 참여
- 성착취 피해자 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
- 현재까지 피해자 지원, 재판모니터링, 의견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진행 등
  - 총 25개 사건, 재판 모니터링 53회(10개 단체 참여)  
(2020.9.11 기준)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응



출처: 추적단 불꽃 블로그

<https://m.blog.naver.com/56flame/221867629293>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및 문화 웹사이트

Send Message



지난 11월13일 리셋과 술연합이 '텔레그램 백시방' 운영자 조주빈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업별 탄원서(리셋 트위터 갈무리)뉴스

ReSet의 활동

출처: 뉴스1 2020.12.6 조주빈이 끝 아니야  
<https://www.news1.kr/articles/?4140676>

# 디지털 성폭력·성착취 조기개입 및 예방사업 - 서울시, 탁틴내일

## 도담별의 주요활동



### 사이버 상담

- 아동 · 청소년 특징에 맞춘 먼저 다가가는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방문 상담
- 상담시간 : 월-금 오전 9시 ~ 오후 10시(점심시간 12시~1시)
-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DM 등 SNS를 통한 상담 진행

### 지원

- '언니'처럼 다가가 온전히 관심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1대 1 맞춤형 프로그램  
(함께 쇼핑, 영화, 식사, 다양한 체험, 진로 탐색, 우리 OO 하고 싶은 거 다 해! 등)
- 상담 참여비 지급
- 병원비 지원, 신고 · 수사 지원, 심리상담, 지낼 곳, 일자리 연결

### 신고

- 디지털 성폭력 · 성착취 위험군 매체 모니터링 및 매체 발굴
- 성착취 가해자 계정 등 조장세력 모니터링 및 신고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후 개정 법령과 의미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전유정(2020.9).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시행 2020.6.2)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변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운반·광고 등 법정형 상향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을 도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제7조의2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 처벌 근거 마련(제11조제5항)
- 상습적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한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제11조제7항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시행 2020.5.19)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500만 원→2천만 원 상향
- 카메라 등 촬영·복제 및 반포 등/ 5년→7년, 3천만 원→5천만 원 형  
량 상향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조항, 상습범죄시 가중처벌 적용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시 처벌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  
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처벌을 명확히 규정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 3년 이하  
의 징역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행 2020.12.10)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 불법촬영물의 등의 삭제·접속차단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제22조의6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0.1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정보 중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제4조 제2항제7호의2 신설)
-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 제4호의4 신설)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 제25호 신설)

# ‘온라인 그루밍’ 법제화의 필요성

- 온라인 그루밍 자체의 학대성
- 온라인 그루밍이 각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시작점
- 현행법의 처벌 공백 해결
  - 성매수 아닌 성적 유인, 권유 처벌 어려움
  - 쌍방향적인 성적 대화 처벌 어려움
  - 온라인 상의 언어 성폭력 성범죄로 처벌 어려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권인숙의원 대표발의안

## (2020.6.11)

-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 행위” 정의
  -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 (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 온라인 그루밍 조항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나.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 마련

# 이후 과제 관련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동의'의 문제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우리사회에서 성별 취약성 지님
-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차에서 오는 취약성 지님
  - 성인으로서 가진 자원들을 활용해 그루밍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는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아동 인권 감수성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의 성적 실험, 탐색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 성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착취는 범죄화

# 온라인 그루밍 법제화 관련 쟁점

- 보호 연령 기준을 몇 세로 설정할 것인가?
  - 피해자는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 vs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
- 피해자의 연령 인식 입증 책임
  - 캐나다(형법 제 172의 1조. 아동을 꾀어내는 행위): 피고인이 그 당사자의 나이가 특정연령 미만의 나이였다는 점에 대해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나이 미만임을 믿었다고 추정. 피해자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방어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
  - 영국, 네델란드, 오스트레일리아 :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피해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우회적으로 규정

# ‘성적 목적의 대화’ 입증 방법 - 영국 입법 례

2003년 성범죄법

제15조(성적 그루밍 등을 위해 아동을 만나는 행위)

제16조(아동과의 성적인 의사소통)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18세 이상의 사람(A)이 저지른 경우,

(a)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A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와 의사소통하고,

(b) 해당 의사소통이 성적이거나<중략>

**(2)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의사소통은 성적이다.**

(a) 의사소통의 일부가 성적 행위와 관련되거나

(b) 합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일부가 성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a)에서 성적 행위는 합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성적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 온라인 그루밍 법제화 관련 제안

- ‘피해자의 동의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 포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전담기구 설치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
  - 영국의 경우,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CEOP(온라인 아동성착취 및 학대 보호센터)를 통해 아동성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여 수행
  - 국내외 공조, 관련 서비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연계를 주도하는 국가센터로서 역할 수행
- 참고: 국회입법조사처, 전유정(2020.9).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 관련 발의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안(2020. 9. 24)